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무상 부상·질병 등을 입은 경찰관에 대한 지원 확대 등〉
■ 김상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717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기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상욱의원 등 10인
2. 제안연월일 : 2024. 07. 12.
3. 회부연월일 : 2024. 07.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무원은 범죄 대응, 신고출동, 재난 대응 등 직무 특성상 유해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으며, 70% 이상이 교대근무를 수행하면서 타 직무 대비 심뇌혈관 질환의 질병 발생률이 높은 등 중증의 질병과 부상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직무복귀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지원의 대상을 “위험직무공상경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는 순직의 경우에만 “위험직무”의 개념을 적용하여 지원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을 뿐, 공무원 상 부상·질병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는 공무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

결과적으로 부상·질병 등을 입은 공무원에 대한 지원 일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재해보상법」보다 오히려 경찰공무원을 두텁게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경찰복지법에서 위험직무 이외의 직무수행 중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인정받은 경찰관에 대한 업무복귀 및 생활안정 지원 등의 국가적 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업무복귀, 생활안정 지원 및 특별위로금 지급 대상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규정하는 “공무를 수행하는 중 부상, 질병”을 입은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그 세부 요건의 규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하여 법령체계를 정비하도록 함(안 제2조 및 제12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현행법(제12조)에 따라 직무복귀·생활안정 지원 및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는 대상을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재해를 입은 경찰공무원(공상경찰공무원)으로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1의2. “ <u>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u> ”이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 <u>공무원연금법</u> 」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2. ~ 4. (생략)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1의2. “ <u>공상경찰공무원</u> ”이란 「 <u>공무원 재해보상법</u> 」 제4조의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공무상 재해를 입은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2. ~ 4. (현행과 같음)
제12조(<u>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 지원</u>) ① 국가는 <u>위험직무공상</u>	제12조(<u>공상경찰공무원 지원</u>) ① ----- <u>공상경찰공무</u>

<u>경찰공무원</u>의 원활한 직무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u>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u>이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치료 등의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로금의 <u>지급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u>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원</u>----- ----- -----. ② <u>공상경찰공무원</u>----- ----- ----- -----. ③ 제2항에 따른 위로금의 <u>구체적인 지급 대상 및 기준, 그 지급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u>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현행법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원활한 직무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치료 등의 요양을 하는 경우에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참고로,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의 요건은 「공무원연금법」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2018. 3. 20. 동법의 전부개정과 함께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되면서 관련 규정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5조에 새로 규정되었음.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찰공무원”이란 「경찰공무원법」 제3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1의2.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이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2. ~ 4. (생략)

제12조(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 지원) ① 국가는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의 원활한 직무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이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치료 등의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로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무원연금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공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유족”이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다.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라. 손자녀(孫子女, 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마.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1. 공무상 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공무상 사고”라 한다)로 인한 부상

가.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다.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공무상 질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가.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나. 공무수행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직장 내 괴롭힘(공무원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

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민원인 등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
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마.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② ~ ⑩ (생략)

제5조(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목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

가. 범인 또는 피의자의 체포

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

라.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 출동, 범죄예방·인명구조·재산보호 등을 위한 순찰 활동, 해양오염 확산 방지

2. ~ 11. (생략)

현행법에 따르면 직무수행 중에 발생한 재해만이 지원 대상이 되고 있어 위험직무의 수행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심뇌혈관 질환이나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질환 등 위험직무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질병등에 대해서는 직무복귀·생활안정 지원 및 특별위로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뿐만 아니라 일반 경찰공무원의 경우도 업무 특성상 야간교대 근무, 밤샘 긴장근무, 불규칙한 근무체계 등 다양한 건강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해당 업무 특성으로 인해 부상·질병 등으로 재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별위로금 지급 등 복지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특별위로금 등의 지원 대상을 위험직무공상경찰관에서 공상경찰관으로 확대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경찰관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취지로서, 예산 소요, 관계기관 의견 등을 감안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먼저, 예산소요에 관해 살펴보면, 개정안과 유사한 법률안이 제21대 국회에서 김석기의원에게 의해 대표발의되었는데¹⁾, 위 법률안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를 보면 향후 5년간 112억원(연 평균 22억 4,000만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5년간 특별위로금 지급 현황 >

구 분	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합 계	1,326명	352명	265명	203명	225명	281명
범인체포	57명(4%)	15명(4%)	12명(5%)	11명(5%)	6명(3%)	13명(5%)
현장출동	787명(59%)	212명(60%)	161명(61%)	104명(51%)	138명(61%)	172명(61%)
순찰활동	78명(6%)	18명(5%)	22명(8%)	11명(5%)	12명(5%)	15명(5%)
교통단속 등	213명(16%)	45명(13%)	31명(12%)	38명(19%)	38명(17%)	61명(22%)
위험직무훈련	65명(5%)	24명(7%)	16명(6%)	12명(6%)	7명(3%)	6명(2%)
범죄수사 등	47명(4%)	16명(5%)	8명(3%)	6명(3%)	10명(4%)	7명(2%)
경비	79명(6%)	22명(6%)	15명(6%)	21명(10%)	14명(6%)	7명(2%)

※자료: 경찰청

개정안과 유사한 법률안이 제21대 국회에서 김석기의원에게 의해 대표발의되었는데, 위 법률안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를 보면 향후 5년간 112억원(연평균 22억 4,000만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므로, 개정안 심사과정에서 예산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도

1) 김석기의원 대표발의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4980호)

필요할 것으로 보임²⁾.

참고로, 기획재정부는 공무상 상해 등을 입은 경찰공무원과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은 달리 대우할 필요가 있고, 경찰공무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에 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므로 공무상 상해 등의 경우 타 직종 공상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근거하여 전체 공무원에 대한 일률적 지원 기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현행 제도는 경찰공무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에 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공무상 상해 등의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근거하여 전체 공무원에 대한 일률적 지원 기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경찰청은 위험직무 뿐 아니라 모든 공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통해 경찰공무원이 직무에 몰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어 찬성한다는 입장임.

2) 국회예산정책처,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6960호) 비용추계서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연평균
특별위로금 지급대상 확대(안 제12조제2항)	2,062	2,147	2,237	2,329	2,425	11,200	2,240

* 2022년 기준 대상 1,564명과 단가 23,503원에 경찰관 증가율(2.4%)과 공무원보수인상률(1.7%)을 각각 적용

참고로, 소방공무원의 경우 「소방공무원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활동·소방지원활동·생활안전활동·소방교육 및 훈련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어 「공무원 재해보상법」제9조³⁾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대상자로 결정되는 때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345

3)「공무원 재해보상법」 제9조(급여의 청구 및 결정) ① 제8조에 따른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인사혁신처장에게 급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급여를 청구할 때(제1호의 요양급여는 동일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서는 처음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기관장(「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확인을 받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는 인사혁신처장이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의 청구를 받은 후에 그 청구인을 대신하여 직접 기관장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 제8조제1호에 따른 요양급여
2. 제8조제3호에 따른 장해급여
3. 제8조제5호나목에 따른 순직유족급여
4. 제8조제5호다목에 따른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청구를 받으면 급여의 요건을 확인한 후 급여를 결정하고 지급한다. 이 경우 제2항 각 호의 급여를 결정할 때에는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 6. 1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재난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결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여의 청구, 결정 및 지급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